

#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

서울성북우체국 공고 제2019-22호

서울성북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담보보관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에의 귀속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## — 다 음 —

1. 국고귀속일: **2019.10.24.**
2. 국고귀속 범위: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담보보관금  
(계약해지후 5년이 경과하여 환불의 청구가 없는 담보금)
3. 국고귀속대상

고객명	승인번호	보관금명	금액	해지일자	비고
(재)천*****	40166	수취인부담 담보보관금	50,000원	2013.03.17	
이**	40155	수취인부담 담보보관금	40,000원	2009.01.01	
손**	40177	수취인부담 담보보관금	50,000원	2012.01.06	
국****	40127	수취인부담 담보보관금	50,000원	2009.07.15	
한국케*****	40014	수취인부담 담보보관금	20,000원	2004.01.01	

**4. 공고기간: 2019.09.24.~ 2019.10.23.(1개월)**

**5. 공고장소: 서울성북우체국 국전계시판**

**서울성북우체국홈페이지(<http://136.epost.go.kr>)**

6. 환급기간: 공고기간내( **2019.09.24.~ 2019.10.23.**)

7. 환급장소: **서울성북우체국 영업과 우편영업실**

8. 환급시 구비서류 및 지참물

가. 정부보관금 수령증서 1부

(분실시: 인감증명서1부, 인감날인한 분실사유서 1부)

- 나. 정부보관금 환급신청서 1부(계약자 인감 날인)
  - 다. 계약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  - 라. 실명확인증표(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개인: 주민등록증)
  - 마. 사업자명의 변경 및 사업자번호 변경시 등기부등본 1부
  - 바. 계약자 본인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    - 1)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    - 2) 인감증명서 1부
9. 연락처 : 서울성북우체국 영업과 우편영업실(02-3396-0150)

**2019년 10월 24일**

**서울성북우체국장**